

이 사 회 규 정

문서 번호 : 별책-총무-03
개정 번호 : 3
시행 일자 : 2021년 12월 29일
페이 지수 : 총 7 쪽

관리 번호 (CONTROLLED COPY)	
관리 책임자	

이 사 회 규 정	문서번호: 별책-총무-03 시행일자: 2021.12.29
F-1. 제정 및 개정 기록	페이지수: 2 개정번호: 3

[illegible]

이 사 회 규 정	문서번호: 별책-총무-03 시행일자: 2021.12.29 페이지수: 3
F-2. 목 차	개정번호: 3

【목 차】

F-1. 제(개)정 기록부

F-2. 목 차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 용

제 3 조 구 성

제 3 조의2 이사회에 의한 권한

제 3 조의3 이사의 권한

제 4 조 의 장

제 5 조 종류 및 소집

제 5 조의2 소집권자

제 6 조 의견청취

제 6 조의2 감사의 출석

제 7 조 결의방법

제 8 조 부의사항

제 8 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제 9 조 사후승인

제 10 조 상황의 보고

제 11 조 간 사

제 12 조 의사록의 작성

부 칙

이 사 회 규 정	문서번호: 별책-총무-03 시행일자: 2021.12.29
목적, 적용, 구성, 권한, 의장, 종류 및 소집	페이지수: 4 개정번호: 3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1)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이사회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조(구 성) 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서 구성한다.

제3조의2(이사회의 권한)

(1)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3조의3(이사의 권한)

(1)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2)사외이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일상업무 관련사항의 질문, 정보제공 요구 및 의견의 제시
2. 각종 회의록, 장부 기타자료의 열람 및 사본의 요청
3.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내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의 요청

제4조(의 장)

(1)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대표이사의 유고 및 결원시에는 <정관>제33조 제2항의순으로 하되 동급직에 2인 이상이 있을때는 그직의 최장 근속자가, 그직의 근속동일시는 년장자가 의장직을 대행한다.

제5조(종류 및 소집)

(1)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2)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3)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결사항이 있을 때는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또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4)의장은 개최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이사회 개최일시, 장소, 의제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사 회 규 정	문서번호: 별책-총무-03
	시행일자: 2021.12.29
소집권자, 의견 청취, 감사의 출석, 결의방법, 부의사항	페이지수: 5
	개정번호: 3

제5조의2(소집권자)

(1)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청취)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 상담역, 고문, 운영임원, 관련직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의2(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결의방법)

(1)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부의사항)

(1)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신설 2021.12.29.)
2. 분기 중 경영성과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이 사 회 규 정	문서번호: 별책-총무-03
	시행일자: 2021.12.29
이사회 내 위원회, 사후승인, 상황의 보고, 간사, 의사록의 작성	페이지수: 6
	개정번호: 3

4.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 사항으로 정한 사항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신설 2021.12.29.)

- (1)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3)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4)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5)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사후승인)

- (1)이사회 결의를 경유할 여유가 없는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전말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

제10조(상황의 보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사항의 실행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 (1)이사회에 간사를 두고 총무팀장이 이에 임한다.
- (2)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사무전반을 정리한다.

제12조(의사록의 작성)

- (1)간사는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 (2)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 사 회 규 정	문서번호: 별책-총무-03 시행일자: 2021.12.29 페이지수: 7
부 칙	개정번호: 3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